

대법원 2012. 9. 27 선고 2012다5959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상고인

조AA

피고, 피상고인

대한민국 외1명

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나55091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.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